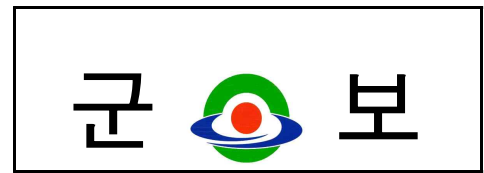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5호 2023. 1. 5.(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1호)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2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을 변경하여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4조)

○ 법 제6조제2항 ⇨ 법 제6조제3항

나. 도로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3호)

다.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 기준 변경(안 별표)

○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사업소 부지 시설기준(도로 폭) 변경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12m이상 도로 ⇨ 8m이상 포장된 현황도로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 6m이상 도로

⇨ 4m이상 포장된 현황도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SJE651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 054-650-62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세부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대상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면이 8m이상 포장된 도로 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대상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면이 4m이상 포장된 도로 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할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6조제3항-----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도로”란 「 <u>도로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조(허가기준) <u>법 제6조제2항</u>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허가기준) <u>법 제6조제3항</u> -----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규정과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건강증진사업, 보건 관련 기념일, 교통수단에 대한 정의 규정

나.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
-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 홍보물, 경품 등을 지원
-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는 교통수단 제공 및 보건소 시설물 개방 등 주민 편의 제공
-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및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가능

4. 제정조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예천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yc1223@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
- 3) 팩스 : 054-650-8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전화: 054-650-6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예천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감염병 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보건 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

나. 「치매관리법」 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

다. 「암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

라.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 날

마.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자살예방의 날

아. 「결핵예방법」 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

자. 이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

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 ·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행사 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운동기구·재활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제9조(위탁)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